대성초등학교 공고 제2021-29호

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 예고

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 · 학부모 ·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9.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제명: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2. 개정 취지

규칙 내 용어 및 관련 내용을 현재 법령,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유치원 규칙(안)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원아, 원장, 기본 과정, 원칙을 유아, 유치원장, 교육과정, 규칙으로 변경

나. 제9조 (교육내용)

②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유아의 신체,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 제10조 (수업일수)

④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⑤ 국가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으로 수업일수의 조정·감축이 필요한 경우 지침을 따른다.

라. 제12조 (입학)

① 입학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 의거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② 입학방법은 당해 연도 신입유아 모집 규정 및 입학관리시스템 선발방법으로 결정한다.

마. 제15조 (수료 및 졸업)

② 1년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때 만 3, 4세 유아는 수료로 인정하고, 만5세 유아는 졸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증서를 수여 한다.

③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바. 제18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 신설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대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별첨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10일까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http://www.kgds.es.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